

Legal Update

2024 년 9 월

공고일	제목	법령	유형	관할 관청	주요 제 · 개정(입법예고) 내용	입법 예고 종료일	시행일	관련 부서
9/2	폴무원 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 지행위 제재 시정명령	심결	결과 (공지)	공정위	■ 주요내용 ➢ 공정위는 폴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 46 조] * <u>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u> ➢ 폴무원건강생활은 2022 년 7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게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음 ○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함. ○ 또한, 상시판매가 외에도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의 자체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통제함.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함.	-	9/2	MKT